

제81조 【의료비 감면】 의료원은 직원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직원의 피부양자에게 다음과 같이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.

1. 직원이 본원에서 진료 시 급여, 비 급여 항목 공히 30% 감면혜택을 준다.
2. 부양가족 진료 시 본인부담금 중 20% 감면 혜택을 준다.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를 포함한다.
3. 용역, 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하여 직원과 동일한 30% 의료비 감면 혜택을 준다.
4. 산부인과 초음파검사는 본인의 경우 50% 감면 혜택을 준다.
5. 장례식장 사용 시 시설사용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준다.
 - 가. 직원 : 전액 감면
 - 나. 배우자, 자녀 : 30%
 - 다. 나머지 의료비 감면혜택 자 : 20%

현행	개정
<p>제81조 【의료비 감면】 의료원은 직원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직원의 피부양자에게 다음과 같이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원이 본원에서 진료 시 급여, 비 급여 항목 공히 50% 감면혜택을 준다. 2. 부양가족 진료 시 본인부담금 중 30% 감면 혜택을 준다.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자녀 외에 형제자매(의료보험카드 등재 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같이 하는 자)를 포함한다. 3. 용역, 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하여 직원과 동일한 50% 의료비 감면 혜택을 준다. 4. 산부인과 초음파검사는 본인의 경우 100% 감면 혜택을 준다. 5. 장례식장 사용 시 시설사용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준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직원 : 전액 감면 나. 배우자, 자녀 : 50% 다. 나머지 의료비 감면혜택 자 : 30% 	<p>제81조 【의료비 감면】 의료원은 직원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직원의 피부양자에게 다음과 같이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원이 본원에서 진료 시 급여, 비 급여 항목 공히 30% 감면혜택을 준다.(개정) 2. 부양가족 진료 시 본인부담금 중 20% 감면 혜택을 준다.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자녀 외에 형제자매(의료보험카드 등재 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같이 하는 자)를 포함한다. (개정) 3. 용역, 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하여 직원과 동일한 30% 의료비 감면 혜택을 준다. (개정) 4. 산부인과 초음파검사는 본인의 경우 50% 감면 혜택을 준다.(개정) 5. 장례식장 사용 시 시설사용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준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직원 : 전액 감면 나. 배우자, 자녀 : 30%(개정) 다. 나머지 의료비 감면혜택 자 : 20% (개정)